

최신 판례 예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서면법인-3237, 2021.08.11

질 의

- 질의법인은 'XX.XX.XX'에 설립되어 BB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과 창고가 전부 전소되어 법인세에 대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하려고 함

질의

- 재해손실 세액공제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출자기업이 설립당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법인-2770, 2021.09.27

질 의

- A법인 B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함

- B법인은 설립등기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진행하여 그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예정이며
- 설립당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질의요지

- 기업의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다음 과세연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피출자기업이 설립당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교환가치 반영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됨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절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사전법령법인-1514, 2021.11.04

질 의

- A법인은 항공기 운수사업(헬리콥터 운행)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1.10월 보유하고 있던 헬리콥

터를 특수관계법인에게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5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거래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는 불분명함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균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항공기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양도한 헬리콥터에 대한 거래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여「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 않아 적절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6652, 2021.11.11

질 의

- 갑법인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자로 '21.1월 사업장과 별도 소재지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 집합건물(지하 지상6층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하 "쟁점건물") 중 지하층과 지상 3 ~ 6층을 취득하였고, 1 ~ 2층은 다른 을법인이 취득하여 과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동일 건축물 내에 다른 업종 영위시 요양기관 인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인허가를 받지 못한 채 쟁점건물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공실 상태이며
 - 「의료법」상 요양병원등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시설로만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그 외 사업(임대업 포함)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임
- 질의법인은 쟁점건물 중 6층을 과세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함

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면제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가 나지 않아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 신

의료법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집합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해당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해당 건물을 면세사업에 활용이 어려워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